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이 발명완성 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 02. 06. 공포, 2024. 08. 07.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승계 시점을 발명완성 시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또한 1999년 이후 일부개정 혹은 타법 개정만 이루어져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현실과 맞지 아니하고,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의 장·절 또는 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처분 제도에 대한 개편(안 제2조, 제25조, 현행 제13조 삭제)

- 1)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가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국유특허권” 명칭을 “국가직무발명특허권”으로 변경함.

(안 제2조)

- 2) 기존 수탁기관의 처분(전용·통상실시) 업무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등록, 처분, 보상,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

조)

- 3)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내용을 정비함.(현행 제13조 삭제)

나. 보상금에 대한 개편(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 1) 별도의 조(현행 제22조)에서 특허권에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던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관련 사항을 등록보상금 조에서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16조)
- 2)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처분수입금 규정 정비함.(안 제17조)
- 3)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 내용 삭제에 따라 규정 필요성이 사라진 발명기관에 대한 포상금을 삭제하고, 국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에게 처분수입금의 17.5%를 지급하던 수탁기관에 대한 포상금을 기여보상금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지급을 처분에 기여한 자로 확대하고 수수료의 기준은 기술이전법 시행규칙 마케팅 대행 수수료 선납 시 수수료 비율인 15퍼센트로 규정하도록 대체함.(안 제18조)

다. 처분 및 보상 시기에 대한 개편(안 제12조, 제15조, 제19조)

- 1) 통상실시 처분 원칙을 폐지하고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방법을 통상실시, 전용실시, 매각 등으로 다각화 하는 것임.(안 제12조)
- 2) 납부기간 연장 및 실시료 감면·중과의 근거를 마련하고, 처분대금에 대한 납부방법과 납부기간 등 실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 15조)

3) 보상금 지급시기 도과로 인해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누락될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상 시기 관련 규정 삭제함(안 제19조)

라. 승계시점에 대한 개정(안 제5조, 제6조)

1)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 승계시점을 상위법 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불승계하는 경우만 통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함.

마. 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1) 국가승계 결정 시 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
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
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
위가 국가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
다.

2.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국가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매각

나. 국가직무발명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5. “처분수입금”이란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제외)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업무의 관장) ①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포기

2.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관리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에 관한 심판·소송
 4.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활용 촉진
 5.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처분대금의 징수
 6. 국가직무발명특허권에 대한 보상
 7. 그 밖에 특허청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관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말한다)의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
 2. 국가승계한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출원

제2장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승계

제5조(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이 포함된다.

⑤ 발명기관의 장이 국가승계를 결정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그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국가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조(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승계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기관의 장과 발명자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공무원등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① 발명기관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국

가승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때에 부기하는 발명기관의 장의 명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발명자의 출원 등) 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을 국가승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 대한민국
2. 관리청: 특허청장

3. 승계청: 발명기관의 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국가승계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국가직무 발명특허권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포기) 특허청장이 「발명진흥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

제12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 ①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그 밖의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 ② 국가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유상으로 처분한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실시료를 감면하거나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실시권자에게 부도, 폐업, 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절차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경영상의 곤란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실시료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유상으로 처분한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실시료를 중과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처분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⑤ 실시료 감면·중과 및 납부기간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국가직무발명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예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그 공공기관에 필요한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2회 이상 유찰(流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특허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 방법, 예정가격 결정, 실시 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게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 ①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대금(이하 이 조에서 “처분대금”이라 한다)은 특허청장과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의 협의에 따라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 금액
2. 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매출액 등에 비례하는 금액

② 처분대금은 처분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간에 합의한 처분 시작시점 이전
2. 당사자 간에 합의한 처분 만료시점 이후
3. 당사자 간에 합의한 처분 기간 중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처분대금의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수입으로 징수한다.

제4장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보상

제16조(등록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에 대하여 아래 각 호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각 권리마다 50만원
2.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3.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처분보상금)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되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기여보상금)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금액을 처분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및 기여보상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국가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1.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2. 제3자가 지분을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④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관포상금 등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결과의 통지) ① 특허청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처분한 경우, 업무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때 협력하는 사항은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과 상대방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공개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에 관한 심판청구서의 부분 또는 소장의 부분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 제출의 요청)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제25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과 발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발명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제10조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제12조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에 관한 사무
4.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연 락 처	(042) 481 - 5406